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2011-67호

예고기간 : 2011. 2. 23~ 3. 3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1. 01. 19, 제24차 회의)의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하는 한편,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7조의4제1항)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을 법적근거 없이 지식경제부 훈령으로 운영
-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
-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으로 위임법리 해소

나. 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 명문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4항)

- 설계감리대상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있으나, 설계감리(감독) 업무 수행은 설계·감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설계사, 설계보조자 등) 모두 가능하도록 해석되어 설계감리의 부실이 우려
- 설계감리업무에 참여자 자격을 전기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규정
- 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을 고급기술자(감리원)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실 설계감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횟수별 차등화(안 별표 6)

- 현행 과태료 규정은 법 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 등 위반양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
-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으로써 국민 부담 완화 및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2011-68호

예고기간 : 2011. 2. 23~ 3. 3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개정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4차 국경위 보고, 2011.1.19)의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전력기술인 경력의 신고·관리 등에 필요한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로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11-51호

예고기간 : 2011. 2. 23~3. 4

담당부처 : 산업안전과(02-6922-0932)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l.go.kr)

● 개정이유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정('90.7.23)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 법적 근거의 불명확, 내용의 중복,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
 -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분리 운영됨으로 인하여 규제내용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관계된 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보건규칙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통합

1) 안전보건 통합규칙의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목 변경(총 670개 조문)

- 제1편(총칙) 현행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내용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조항(85개 조문)
- 제2편(안전기준) 기계·설비, 폭발·화재, 전기작업, 건설작업, 중량물·하역·벌목작업, 궤도작업 등 현행 안전 규칙(334개 조문)
- 제3편(보건기준) 관리·허가·금지대상물질, 소음·진동·분진·이상기압, 방사선, 밀폐공간, 근골격계 등 현행 보건규칙(251개 조문)

* 총 804개 조문(안전규칙 523개조, 보건규칙 281개조)을 670개조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축소 (134개 조문 삭제)

나. 법령체계 정비

1) 법적 근거의 명확화

- 통합규칙의 법적 근거규정 보완
 - 현행 안전규칙에 미비 되어있던 법률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 해소(제1조)
-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안전·보건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각종 기록보존 의무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안 제38조, 제350조)
 - * 산안법 제64조(서류의 보존)에 기록보존 의무조항 신설 예정

2) 총칙 신설

-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에 각각 규정하던 ‘작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안전·U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제20조)

- 건설작업에만 적용하던 “비계 및 추락 또는 붕괴방지 조치”를 전체작업에 적용하기 위해 “총칙”으로 이동(안 제42조~제48조, 제50조~제71조)
-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비계에 관한 안전조치를 “총칙”에 신설(안 제69조, 제70조)
- 그 밖에 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요건,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이동식 비계에 관한 사항을 보완(안 제13조, 제42조, 제43조, 제68조)

3) 조문체계의 정비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제2절 일반기준)은 제1편 총칙 제2장 및 8장~10장에 규정
- 작업장 규정(제2편 제1장)의 작업장·통로·계단 등을 각각 절로 세분화한 것을 ‘제1편 제2장 작업장’으로 통합
- 제3편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절 구분을 없애고 ‘제2편 제1장 제7절 보일러 등’으로 통합
- 제14장 제1절 ‘차량계 건설기계등’의 관 구분을 없애고 제12절 건설기계 등 ‘으로 변경
- 각 장의 개별조항에 각각 규정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 또는 “안전기준”에 규정하고 관련 조항 삭제
 - 출입의 금지(안 제20조), 통로의 설치(안 제21조),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보호구 지급·관리(안 제32조, 제33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안 제35조), 사용제한(안 제36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안 제37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안 제38조), 작업자휘자의 지정(안 제39조), 신호(안 제40조), 운전위치의 이탈 금지(안 제41조), 탑승의 제한(안 제86조), 원동기 및 회전축 위험방지(안 제87조), 방호장치의 조정(안 134조), 과부하의 제한(안 제135조)
- 현행 제3편(기계·기구 및 기타 설비에 관한 위험방지) 내용 중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제2편 제1절(기계 등의 일반기준)에 규정(안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다. 변화된 여전 반영

1) 규정 미비 및 제도 신설에 따른 보완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노동부령 제289호, '07.12.31)에 따른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134조, 제157조부터 제159조까지)
-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험장소에서 용접작업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마련(안 제241조)
 - * '08.1.7 사망 40명, 부상 10명, '08.12.5 사망 7명, 부상 2명
- 압력방출 장치의 작동시험을 기기별로 차등화하고 안전설비 설치 유도(안 제261조)
-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 화염이 역화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통기밸브가 설치된 통기관에 역화방지기 설치의무 면제(안 제269조)
- 기밀시험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시험 전에 시험장비의 견고한 설치 및 확인 규정 마련(안 제300조)
 - * '08년도 인천지역에서 볼트체결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2건 발생
-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폭발위험장소(제333조)’ 또는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제337조)’를 명확히 규정(안 제230조, 제231조)
-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굴착공사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38조, 제39조, 제369조)
- 서로 다른 층에서 가연성물질 취급 및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상부에서 용접기, 그라인더 및 공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한 불티가 하부의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폭발 또는 화재예방조치 신설(안 제239조)

2) 국제표준 및 기술변경에 따른 보완

- 위험물질군의 명칭을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라 변경(안 제113조, 제225~227조, 제230조~제233조, 제236조, 제240조, 제241조, 제244조, 제256조, 제262조, 제263조, 제267조~제269조, 제278조, 제281조, 제283조, 제296조, 제299조, 제325조, 제350조, 제355조, 제356조, 제395조, 별표 1, 별표 9)
 - 위험물질의 정의는 시행규칙 별표11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종류만 규정(안 별표1)
 - 위험물질의 기준량을 GHS(세계조화시스템) 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안 별표 9)
-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관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안 제337조)
- 단로기 등의 개폐, 정전작업 등을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에 규정(안 제318조부터 제324조까지)
- '차량계 건설기계'의 명칭과 종류를 알기 쉽도록 예시형태로 규정(안 별표 6)
-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업무에 전기분야 및 보건분야를 추가(안 별표 2)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11-63호

예고기간 : 2011. 2. 21 ~ 3. 3

담당부서 : 자원재활용과(02-2110-6952)

전문참고 : 환경부(www.me.go.kr)

● 개정이유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안 제20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활용부과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5조제2항제19호 개정)

직장내 동호회 활동중 급성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재해에 해당되는가?



글 박기동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만해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언론중계위원회 선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Q 직장에서의 마라톤동호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직장에서 공식마라톤대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받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마라톤 연습을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기능변화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가요?

A 대법원 2009두58 판결은, 농협중앙회 시지부 산하 보증센터에 근무하던 정모씨가 마라톤동호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주 2회 연습하던 중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금융업무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 소속 직원들이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면서 은행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소속 직원들에게 마라톤대회에 많이 참여 할 것을 권유하였고, 지점장도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시지부 행사인 해변마라톤대회에 적극 참석하라고 권유하였는데, 망인은 토요일 오전에 정기적인 마라톤 연습으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14~15km 정도 달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기능변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서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계속되는 질책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이 사건 대회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마라톤동호회를 주축으로 하여 그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이 사건 연습에 참여한 행위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연습이 마라톤동호회의 자율적인 정기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정액적산방식의 감리 배치 인월수 산정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에서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자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기초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운영요령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 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수를 산출시 적용하는 공사비에는 관급 자재비(자급자재대)를 포함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9. 8)

- 현장 내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원입니다. 전기감리원이 타 공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업무를 관장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고시) 제51조(환경관리)에 서는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책임자 등 조직을 편성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 고유의 전기감리업무 외에 현장 내 모든 환경 관리업무(비산먼지, 소음, 공해, 폐기물처리, 수질오염 등)를 공동 업무 내정자로 선정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 의견은 법적으로 환경관리업무 중에 부실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시 전기감리업무와 상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전기감리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의 규정은 전력시설물공사 중 전력시설물에 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현장에 대한 규정이므로 구하께서 배치된 공사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체결된 계약내용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 질문#1 전기감리원이 타 분야에 관련된 내용의 환경관리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질문#2 상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전력시설물공사와 무관한 건축공사에 대한 환경관리업무를 전기감리원이 수행하는 것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9. 14)

- 자식경제부고시 제2009-160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하도급 관련 사항)를 보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감리원이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발주처와 시공사가 회의시 하도급에 관하여 하도급 검토를 인하고 지명원만 제출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리원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 전기공사감리를 실시하는 공사에서 하도급이 발생시 필히 법적으로 하도급 검토를 실시하겠끔 되어있는바 하도급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감리회사는 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전력기술인협회에는 4명의 감리원을 신고 해놓고 실제로는 1명만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감리회사는 발주처 사유로 인해 공사휴지 기간이 발생하자 발주처가 전기사업자인 구역 전기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관련 전력기술관리법과 시행령에는 공사휴지기간중 최소 1인 배치가 의무하고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하고 공사휴지 기간 중 감리원 철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감리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민원을 어느 기관에 어떤 형식으로 진정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벌은 감리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따른 지명원은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하도급이 예상되는 업체의 사전 협의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하도급의 검토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9. 11)

- 귀하의 질의내용은 접수번호(2AA-0903-051783, '09.3.19) 와 동일한 내용으로써 그 답변으로서 그 답변으로 같음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PQ고시 [부표 4-2]의 부실별점측정기준에 따르면 감리원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2.1),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2.15) 등에는 감리업체에게 부실별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귀하의 공시현장 감리원 배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부 또는 전력기술인협회에 진정하시면 현장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9. 8)